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이익결정요인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홍 형 선

국문초록

201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비영리법인 수가 총 2만 240개이며 그중 1만 6천개의 비영리법인이 흑자를 시현하였고, 당기순이익의 규모도 비영리법인 당 7.5억원으로 총 11.6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학교법인(대학병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감안하면 실제 순이익 규모는 이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및 소비자 설문조사 방식으로 비영리조직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공익성에 대한 일반자의 신뢰와 법인세 등 비과세감면의 공익적 혜택 때문에 비영리조직의 매출(이익)이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기업보다 수익률이 낮을 것이란 일반적 인 상식은 통용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비록 비영리조직이 공급하는 용역과 재화에 대한 가격인하 요인은 존재하나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이 대부분 영리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시장기제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이 수익사업을 통해 시현한 이익이 비영리조직의 본래 공익사업으로 재투자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일부 공익법인에 대한 100%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저율의 과세대상으로 편입시켜 과세자료를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실적은 일반인에게도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이익을 내고도 대외적으로 손실이 시현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현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조정신고 제도로 비영리조직의 법인세 감면방식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주제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공익법인, 비영리조직, 수익사업, 의료법인, 학교법인

투고일: 2016. 8. 12. 수정일: 2016. 11. 15. 게재확정일: 2016. 11. 18.

* 국회사무처(hong0125777@naver.com)

I. 서론

비영리조직은 기업부문과 정부부문 어느 부문에도 속하지 않은 조직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을 말한다.

김인춘(1998)은 비영리조직을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정의하였다.¹⁾

첫째, 법적 정의(legal definition)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비영리조직은 법에 따라 조세 감면을 받는 조직을 지칭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조직구성원에게 수익배분을 할 수 없고, 그 사업수익이 면세대상이 된다. 둘째, 조직의 수입원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economic/financial definition)이다. UN의 국가회계체계(System of Nation Accounts, SNA)에 따른 접근방식으로서, 그 조직의 절반 이상의 수입이 회원 및 후원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모아지는 조직을 지칭한다. 셋째,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 또는 목적에 따른 정의이다. 즉 비영리조직은 공공의 목표를 제공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소외되고 무시된 사람들을 돕고, 정치적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관심과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조적 운영상의 정의이다(structural/operational definition). 공식적 조직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으면서 정부와 분리되어 있는 민간기구나 영리기업처럼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자치적인 의사결정 기제로 외부 실체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배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 물적, 인적으로 일정 수준의 자발적 충당이 가능한 조직을 일컫는다. Salamon & Anheier(1995)의 정의를 본 연구의 관점에서 재구성해보면, 비영리조직이란 공식적이면서 어느 정도 제도화된 조직으로서 정부와 분리된 사적 민간기구이지만 영리기업처럼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의사결정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져 외부 실체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지배되지 않고, 또 이를 위하여 물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충당이 가능한 조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비영리조직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수익사업은 회비, 기부금과 같이 그 수익금이 비영리조직의 자발적인 물적 충당수단이란 점과 그 수익을 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연계된다.

우선, 비영리의 의미가 중요하다. 조직이나 구성원 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는 조직이어야

1) 박경권·이종만·박한수, 「비영리 조직과 경영」, 2013. 재인용(9쪽).

한다. 다시 말해, 영리기업과 달리 원가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통해서 비영리조직 본래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은 두 유형으로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비영리활동 자체가 수익을 수반하게 되는 수익사업이다. 의료행위가 대표적인 사례²⁾이다. 학교, 의료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수익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인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단순히 비영리활동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이다. 대학법인의 제조업,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이 그 예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 공익법인에 대한 완전비과세방침을 철회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소득(unrelated business income)의 개념으로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자(前者)가 비영리활동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후자(後者)와 마찬가지로 결국 시장의 가격기제로 책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영리기업과 같이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비영리조직 재화의 가격이 결정된다면 주주이윤배당의 유인은 없다고 하더라도 비영리조직은 실질에 있어서는 이윤 극대화의 수익모형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의 수익률과 그 결정요인을 영리기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비영리조직 수익성 수준의 판단, 그 사용의 공익성 확보방안 및 비과세감면 적정성에 대한 논의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II. 비영리법인 설립근거 및 수익사업, 비과세제도 현황

1. 비영리법인 설립관련 입법현황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과 관련한 법률을 보면, 우선 법인과 단체를 포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외의 다른 법률은 비영리조직을 법인에 한정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비영리조직이 경제,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법적실체

2)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의료행위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

가 분명한 법인으로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대부분은 「민법」 제32조³⁾에 따라 설립되나, 이외에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⁴⁾과 그 밖에 「사립학교법」-학교법인⁵⁾,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⁶⁾, 「의료법」-의료법인⁷⁾ 등 특별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있다.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i)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ii)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iii)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iv)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v)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vi)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개념적 속성에 해당하는 공익활동의 추구, 이익분배의 금지 등이 분명히 적시되고 있다.

같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사업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그 설립근거법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사회기여도 등에 따른 세제혜택이나 소관 부처의 관리, 감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3)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5)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6) 특정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과 자금을 보유한 ‘의료기관’ 중에서 시도지사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및 비과세제도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를 신고한 비영리법인 수는 총 2만 240개로 2006년도 1만 5,448개에 비해 연평균 4.8%로 증가한 규모이다. 영리법인(46만 2,154개) 수의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중 1만 6,000개의 비영리법인이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당기순이익 규모는 1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평균 순이익이 7.5억원에 이르고 있어 영리법인의 순이익 6.6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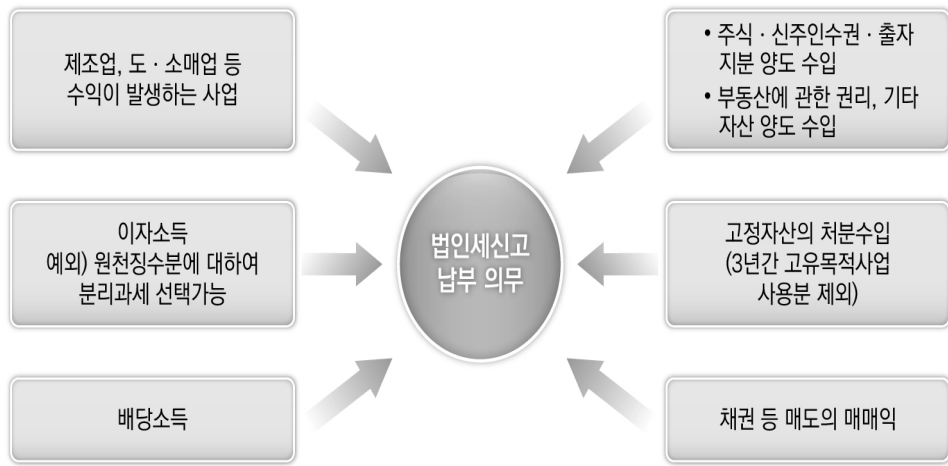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또는 비과세 감면 등의 시행을 위하여 실정법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인다.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활동과 재원충당을 위한 수익활동으로 구분해서, 전자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후자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리기업의 주주배당 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은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본적 잉여를 획득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한, 영리기업에는 주어지지 않는 비과세감면의 혜택⁸⁾을 부여하고 있다. 본래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금전적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의 이론적 배경에 비추어볼 때도 위와 같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개념적 분류는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업종에 대하여 제조, 유통, 도소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걸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초·중등 및 대학의 학교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비영리활동 자체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론 예금보험, 폐기물처리 및 연금 등 일부 공공기관(특수법인)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영리활동과 무관한 전 업종의 수익사업을 인정하고 있다⁹⁾.

8) 수익사업의 수익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손금산입을 허용되는 제도이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 다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 조경수 식재 등 제외한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등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사회복지관, 한센인시설등, 자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입양기관 등) 5. 연금 및 공제업(국민연금사업등) 6. 사업보장보험업(의료보험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그림 1] 법인세신고 대상 수익사업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예컨대, 각종 병원에 대해서 법인세 외에도 지방세 등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이란 연구대상을 감안할 때 이하에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인 법인세 비과세 감면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도 현행 법인세율인 10~22%를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통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영리법인에서는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과표대상이 되는 당기순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금산입토록 하고 있다.

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의 일부(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등) 9. 대한 적십자의 혈액사업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1. 수급권자, 차상위층 등의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 12.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기원의 승단, 승급 심사사업 등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표 1] 의료기관 설립유형별 세제혜택 비교

	개인병원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병원
			교육용병원	수익용병원	
병원 성격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인 (개인)이 설립한 사업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41조에 의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양성을 위 한 교육 목적	학교법인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 사업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기관
세제 혜택	없음	① 법인세: 소득금액 50%까지 목적사 업준비금 인정 ②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특별시, 광 역시, 도청소재지 지역과세) ③ 지방세: 감면	① 법인세: 소득금액 전액 목적사업준 비금 인정 ②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③ 지방세: 사용용도 에 따라 감면	① 법인세: 소득금 액전액 목적사업 ② 취득세, 등록세: 과세 ③ 지방세: 감면	① 법인세: 소득금 액전액 목적사 업 준비금 인정 ② 특정물품 감면 세: 사회복지법 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Ⅲ.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이론적 배경: 신용이론(Trust Theory)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은 상업성과 비영리성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다.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때로는 동종 영리기업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한다. 그 이용대가에 수익이 포함되며 다만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분배만 안될 뿐이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은 의료업과 같이 비영리 조직 활동으로서 수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익사업은 비영리조직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용이론(Trust Theory)¹⁰⁾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이 비록 상업적 이윤활동이기는 하나 그 수익이 분배되지 않고 비영리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동종 영리기업의 제품보다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영리적(non-distribution constraint)이라는 성격 자체가 해당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이

10) '계약실패이론'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음.

론의 논리기반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서 출발한다. 보건, 택자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공급자 자체의 신뢰성(trustworthy)이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영리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차단된 정보접근을 이용하여 질 낮은 서비스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는 시장실패 상황에 봉착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이론을 시장실패이론(Market failure theor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거래비용이 요구하게 되고,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비영리조직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Arrow 1963; Nelson & Krashinsky 1973). 이러한 소비자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선호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과 달리 이윤을 배분하지 않는 비영리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Hansmann 1987). 신용이론은 다양한 비영리조직의 활동 중에서 이용료를 청구하는 상업적 활동의 적용에 적합한 이론이다. 또한 ‘상업적 비영리기업(박경권·이종만·박한수 2000)’은 언제든지 영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다.

2. 연구 문제(Research Questions)

본 연구에서는 신용이론의 관점에서 비영리기업의 공익적 특성이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은 동일업종의 영리기업과 끊임 없는 경쟁관계에 있기도 하고, 특히 시장의 가격기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영리조직의 제품이 영리기업보다 질 좋고 믿을 수 있다는 신용이론의 관점이 작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아래 [가설 1]을 설정하였다. 또한 신용이론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기업보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더 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뢰는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점을 감안하여 [가설 2]를 설정하여 검정하고자 한다. [가설 3]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제혜택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 사업 활동의 수익성은
영리기업보다 낮을 것이다.

[가설 2]. 비영리조직의 공익성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한다.

[가설 3].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익사업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

3.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이익률 결정요인의 분석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종속변수는 기업이익률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인 자산 수익률(당기순이익/자산, 이하 ROA)로 설정하였으며, 영리기업의 ROA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ROA로 나누어 산출된다. ROA 결정요인은 크게 ‘공익적요인’과 ‘기업적요인’을 구분하여 전자는 ① 제품구매에 영향을 주는 사회공헌도 평가지표를 ② 법인세 감면을, 후자 즉 기업적 요인의 경우 ③ 제품경쟁력 ④ 원가절감 및 ⑤ 재무적 안정성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영리기업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차이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분산분석을 통해 각 변수가 영리,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상기 [가설 1]은 영리, 비영리법인의 자산수익률 및 당기순이익 차이에 대해서 F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연구분석틀



IV. 연구 설계

1. 분석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영리법인 사업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수익률과 그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임의적으로 추출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각각 100개이다. 비영리법인은 86개의 의료법인과 14개의 사립대학법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영리 및 비영리기업의 수익률 결정요인 분석이란 연구주제를 감안하여, 2012년 재무제표에서 적자를 시현한 기업은 모집단에서 제외하였고, 비슷한 자산규모의 영리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변수간의 분산분석(ANOVA)과 다중회귀분석(OLS)을 병행하였다.

2. 연구모형 및 변수 정의

가.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영리법인과 대비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수익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2년도 재무제표 및 서베이 자료〈부록 1〉를 토대로 횡단면분석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아래의 수식과 같다.

$$ROAnp = \alpha + \beta_1 SC + \beta_2 CT + \beta_3 PC + \beta_4 LC + \beta_5 L + \beta_5 np + \epsilon \quad (1)$$

$$NInp = \alpha + \beta_1 SC + \beta_2 CT + \beta_3 PC + \beta_4 LC + \beta_5 LI + \beta_5 np + \epsilon \quad (2)$$

수식 (1)은 자산수익률(ROA)을 종속변수로, 수식 (2)는 자산수익률의 분자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만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이다. 당기순이익과 자산수익률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입체적인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구체적인 정의와 기대부호는 [표 2]로 정리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tata 1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 2] 변수정의 요약

		영문약자	변수이름	기대 부호	비고
종속변수		ROA (Return On Assets)	자산 수익률		(당기순이익 ÷ 자산) × 100
		NI (Net Income)	당기순이익		—
독립 변수	공익적 요 인	SC (Social Contribution)	사회공헌도	(+)	사회공헌도 서베이 조사를 통한 구매력 측정
		CT (Corporate Tax)	법인세납입률	(-)	(법인세납입액 ÷ 당기순이익) × 100
	기업적 요 인	PC (Product competitiveness)	제품경쟁력	(+)	제품 가격 및 질에 대한 서베이 조사
		LC (Labor Cost)	인건비용	(-)	원가절감 지표 (인건비 ÷ 매출액) × 100
		L (Liability)	부채비용	(-)	채무 안정성 지표 (타인자본 ÷ 자기자본) × 100
		NP	비영리법인 더미		

나. 종속변수: 자산수익률(ROA) 및 당기순이익(NI)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신용이론에 기반을 두고 비영리조직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기업수익률 지표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들 지표에는 자산수익률 이외에도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있다. 영업이익률은 순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로서 전반적인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은 투여된 자본에 대한 이익비율로서, 주주지분에 대한 운용효율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에 반해 자산이익률은 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자산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즉 부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익률보다 포괄적이며, 자산 활용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영업이익률과도 차별화된다. 다만, 이들 지표의 분자는 공히 당기순이익이 되며 연구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도 별도로 분석한다.

아울러 영리,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차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산출조정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을 위하여 당기이익의 일부(의료법인 50%) 또는 전부(학교법인)를 손금처리(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영리법인

과 대등하게 당기순이익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손금처리액을 당기순이익으로 편입시켜 측정했다.

다. 독립변수

(1) 공익적 요인

(가) 사회공헌도(SC)

Lekert-type의 서베이〈부록 1.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의 사회공헌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특정업종 또는 특정제품에 대한 영리, 비영리법인의 사회공헌도 비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비교평가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많은 자선행위 등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나 사회공헌을 위한 비영리법인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실패, 즉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조직(For-profit Organization)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약화가 비영리조직이 직접 나서게 만든다는 신용이론의 관점에서, 사업수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공헌도가 높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법인세납입률(CT)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에 비하여 더 많은 비과세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부터 시작하여 매출·매입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까지 다양하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감면액만을 측정한다. 영리법인과 비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무제표에서 자료획득이 용이한 당기순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 비율로 측정하여 비영리, 영리법인의 법인세 감면수준을 비교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또는 고유목적사업비) 조치를 통해 비용처리하거나, 만약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익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 조정을 통해 그 이익금을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학교법인은 당기순이익의 100%, 의료법인은 50%까지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 법인의 당기순이익 대비 법인세 납부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자산수익률의 당기순이익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2) 기업적 요인

(가) 제품경쟁력(PC)

Lekert-type의 서베이<부록 1.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 및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평가하였다. 설비, R&D 투자 등에 있어 영리법인의 우위가 예상된다. 하지만 비영리법인도 보육, 보건서비스 등의 일부 업종에서 비영리성의 소비자 신뢰 때문에 우위의 평가가 가능하다. 사회공헌도와 같이 기업별 비교가 아니라 비영리, 영리법인에 대한 전체 비교평가의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나) 인건비율(LC)

제품경쟁력 변수가 매출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라면, 인건비율은 원가절감 성과를 측정하고자 변수로 설정하였다. 다만, 인건비율 $[(\text{인건비} \div \text{매출액}) \times 100]$ 대신 매출원가율 $[(\text{매출원가} \div \text{매출액}) \times 100]$ 이 원가절감에 대한 경영성과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계정과목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의 작성은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매출원가율을 대신하여 인건비율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건비’에는 인건비성 경비 즉 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서 산정하였다.

(다) 부채비율(LI)

제품경쟁력 및 인건비율 변수가 영업적 요인에 대한 경영성과 지표라면 부채비율은 영업외적 요인에 대한 수익률 측정지표가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자비용 증가로 채산성 악화요인이 되며, 특히 유동부채비율 $[(\text{유동부채} \div \text{유동자산}) \times 100]$ 은 부도위기의 측정지표가 된다. 수익률 결정요인의 분석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유동부채비율은 제외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법인과는 달리 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각종 적립금을 통해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항목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은 부채항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매년 결산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여 적립된 향후 사용될 투자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회계적으로 부채항목에 포함된

다. 따라서, 양 법인간의 대등한 비교를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에 편입시켜 측정했다.

(3) 더미변수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수익결정 요인에 대한 영리법인과 차이분석 등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1, 영리법인은 0으로 더미변수를 측정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3. 데이터 수집 및 표본

본 연구에서 데이터 수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는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와 서베이 조사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산수익률, 법인세 납입률, 인건비율 및 부채비율은 각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획득하였고, 사회공헌도 및 제품경쟁력은 서베이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2012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은 총 46만 2,154개이고, 비영리법인은 2만 420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에 영리 및 비영리법인의 모집단을 아래와 같이 재설계 하였다.

첫째, 영리법인의 경우 NICE 신용정보평가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는데,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기업(32,745개) 중에서 재무제표 자료가 공시된 23,328개 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금융기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그 활동재원이 주로 기부금에 의존하거나 수익사업의 규모가 미미하여 양적 데이터 분석이 사실상 어려운 사회복지, 연구 및 학술활동, 종교, 자선, 환경 및 인권,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나머지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서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을 모집단으로 제한하였다. 수익사업의 규모, 동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 및 업종에 대한 소비자가 인지도를 고려한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학교법인 모집단을 추가적으로 제한하였는데, 총 2,652개(어린이집, 초·중등, 대

학)중에서 208개 4년제 사립대학¹¹⁾의 수익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의료법인의 경우 총 1,262개 법인 중에서 경영구조가 전혀 다른 국공립의료원은 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베이 설문조사는 소비의 자기결정이 가능하고,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장인 남녀 103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였고, 설문지는 직접 전달(85명)하거나 이메일(18명) 발송한 결과 98명이 회신하여 95.1%의 응답률을 보였다.

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량

가.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개괄적으로 보면, 자산수익률(ROA), 당기순이익(NI), 사회공헌도(SC), 인건비율(LC) 변수의 경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평균이 영리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납입률(CT), 제품경쟁력(PC) 및 부채비율(LI)의 경우 영리법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로 사용한 자산수익률(ROA)은 영리법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6.06, 6.56인 반면 비영리법인은 각각 8.28, 10.35로 비영리법인의 수익률이 높지만 기업별로 편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당기순이익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서 비영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영리법인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공헌도(SC)는 영리법인(2.86) 보다 비영리법인(3.48)이 높게 평가되었다. 특정 기업이나 업종의 구분 없이 영리,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인식 조사로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헌도 평가가 높게 나오고, 이는 비영리조직 수익사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란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제품경쟁력(PC) 변수도 사회공헌도와 같이 영리, 비영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 및

11)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으로 공시대상이 아니다.

재화에 대한 일반 인지도 서베이 조사결과로서 영리법인의 제품이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인세납입률(CT)은 비과세감면이 비영리법인이 크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바, 영리법인의 평균은 82.81인 반면 비영리법인의 납입률 평균은 이보다 6배 정도 낮은 12.71로 조사되었다. 인건비율(LC)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합계)로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리법인은 5.42이고, 비영리법인 평균은 46.20으로 9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 중심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인건비 위주의 비용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LI)은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입에 의존하는 의료법인의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기술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OA (자산수익률)	영리법인	100	6.06	6.56	.01	41.67
	비영리법인	100	8.28	10.35	.07	77.38
	전체	200	7.17	8.71	.01	77.38
NI (당기순이익)	영리법인	100	7.01	1.64	0.65	11.19
	비영리법인	100	7.46	2.36	0.00	13.00
	전체	200	7.23	2.04	0	13.00
SC (사회공헌도)	영리법인	100	2.86	1.36	1.00	5.00
	비영리법인	100	3.48	.92	2.00	5.00
	전체	200	3.17	1.20	1.00	5.00
PC (제품경쟁력)	영리법인	100	3.97	1.16	2.00	5.00
	비영리법인	100	2.92	1.07	1.00	4.00
	전체	200	3.44	1.23	1.00	5.00
CT (법인세납입률)	영리법인	100	82.81	548.33	.02	5502.56
	비영리법인	100	12.71	52.30	.00	500.00
	전체	200	47.76	390.10	.00	5502.56
LC (인건비율)	영리법인	100	5.42	4.39	.48	21.37
	비영리법인	100	46.20	11.94	5.30	64.86
	전체	200	25.81	22.32	.48	64.86
LI (부채비율)	영리법인	100	266.43	666.66	-385.52	6409.41
	비영리법인	100	217.52	730.08	-3505.95	5628.68
	전체	200	241.98	697.76	-3505.95	6409.41

주: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나.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변수 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수이다. 비영리, 영리법인의 수익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모형을 회귀분석하기 전에 사용된 변수들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수가 통상 0.7 이상이면 강한 선형성이, $0.3 < r < 0.7$ 이면 양 변수간에 뚜렷한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 비영리 영리법인을 합친 전체에서는, 〈자산수익률(ROA) 및 당기순이익(NI)〉 종속변수 상호간과 〈사회공헌도(SC)와 종속변수(자산수익률(ROA) 및 당기순이익(NI))〉 간에는 각각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났고, 반면에 〈사회공헌도(SC)와 제품경쟁력(PC)〉, 〈인건비율(LC)과 제품경쟁력(PC)〉 간에는 각각 음(-)의 뚜렷한 선형관계가 나타났고, 이 결과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비영리법인터미(np)와 인건비율(LC)〉 간에는 상관관계수 ρ 가 0.9155로서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비영리법인 관측치의 변수 간 상관관계수는, 자산수익률(ROA) 및 당기순이익(NI) 종속변수 상호간은 영리법인(0.5142)보다 높은 0.6192로 조사되었다. 자산수익률의 산식이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임을 감안할 때 비영리법인이 보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공헌도(SC)와 종속변수(자산수익률(ROA) 및 당기순이익(NI)) 간에는 각각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났고, 또한 제품경쟁력(PC)과 종속변수(자산수익률(ROA) 및 당기순이익(NI)), 그리고 사회적 공헌도(SC)의 상관관계수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와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법인세납입률(CT)과 당기순이익(NI)의 상관관계수는 기대부호와 같이 음(-)의 관계에서 뚜렷한 선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영리법인 변수간 상관관계수의 특이점은 기대부호와 달리 제품경쟁력(PC)과 종속변수 음(-)의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제품경쟁력과 사회적공헌도는 강한 음(-)의 선형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비영리법인의 양(+)의 상관관계와 정반대의 결과이다. 또한, 부채비율(LI)과 당기순이익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가설의 기대부호와 같은 방향성에서 뚜렷한 선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방향성에서는 영리법인과 같으나 뚜렷한 선형성을 보여주지는 못했었

다. 상관계수가 높은 독립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5 미만으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보았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ROA	NI	SC	CT	PC	LC	I
ROA	전체	1						
NI	전체	0.5925 ***	1					
	영리	0.5142 ***						
	비영리	0.6192 ***						
SC	전체	0.4975 ***	0.5416 ***	1				
	영리	0.5677 ***	0.4731 ***					
	비영리	0.4916 ***	0.6735 ***					
CT	전체	-0.0761	-0.2687 ***	-0.1556 **	1			
	영리	-0.1035	-0.4037 ***	-0.1513				
	비영리	-0.1275	-0.4154 ***	-0.2417				
PC	전체	-0.037	0.1257 *	-0.3274 ***	0.0907	1		
	영리	-0.5694 ***	-0.4321 ***	-0.9673 ***	0.1020			
	비영리	0.4239 ***	0.6690 ***	0.8873 ***	-0.2545 *			
LC	전체	0.025	0.0259	0.2549 ***	-0.0886	-0.4024 ***	1	
	영리	-0.0576	-0.1955 **	0.1685 *	-0.0485	-0.1482		
	비영리	-0.2771 **	-0.1987 **	-0.0011	0.0141	0.0011		
LI	전체	-0.1247 *	-0.1598 **	-0.1083 *	0.0447	0.0356	0.0334	1
	영리	-0.1871 *	-0.3181 ***	-0.1083	0.0695	0.1087	-0.0577	
	비영리	-0.0861	-0.0572	-0.1020	-0.0690	-0.0618	0.2432	
np		0.1276 *	0.1119 *	0.2582 ***	-0.0901	-0.4249 ***	0.9155 ***	-0.0351

주: 1. 상관계수의 ***, **, *는 유의수준 1%, 5% 및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2. 분산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수행하였다. 특히 신용이론에 기반을 둔 본 연구는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 수익사업의 수익성은 영리법인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연구[가설 (1)]을 설정하였고, 아래의 분산분석 결과를 통

하여 동 가설의 기각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우선 분산분석 결과를 개괄해보면([표 5] 참조), 부채비율(LI) 변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나머지 변수 총자산수익률(ROA), 당기순이익(NI), 사회공헌도(SC), 법인세납입률(CT), 제품경쟁력(PC), 인건비율(LC)에서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변수(1%)와 달리 자산수익률의 P값은 7.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산수익률과 부채비율 간 평균의 차이가 양 그룹 간 유의하지 않은 것은 상호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기초통계량에 밝혀진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관측치 86)의 부채비율이 영리법인의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양 변수의 산식($ROA(당기순이익 \div (자기자본 + 부채) \times 100)$), $LI(부채 \div 자기자본 \times 100)$)에서 부채항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법人间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명된 변수 중 당기순이익(NI), 사회공헌도(SC) 및 인건비율(LC)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높게 나타났고, 법인세납입률(CT)과 제품경쟁력(PC) 변수는 영리법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공헌도(SC)와 제품경쟁력(PC)은 Likert-type의 서베이 결과를 해당 기업 및 수익사업의 자산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해서 측정한 변수로서 사회적 공헌도는 비영리법인이, 제품경쟁력은 영리법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법인세납입률은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보다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비영리조직의 공익활동에 대한 국가의 비과세감면 혜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나타내는 인건비율은 비영리법인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경우에도 병원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의 고임금 수준이 주로 반영되었으나 모든 업종에서 무작위 추출한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의 특성상 업무자동화 및 자본고도화를 통해 인건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춰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²⁾

둘째, 연구가설과 관련해서는 수익성 지표인 자산수익률(ROA)과 당기순이익(NI)의

12)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특히 제조업), 회계상 인건비 즉 판매비(판매비와 관리비)상 임금,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합한 금액 외에도 매출원가 등으로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보다 과소 계상될 수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국세청 공시 비영리법인 재무제표)로는 접근에 한계가 있으므로 판매비 상 인건비만을 비교했다.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산수익률은 3.28의 F값으로 10%의 유의수준에서, 당기순이익은 12.51의 F값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각각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뢰수준의 차이는 자산수익률 산식(算式)의 분자로 계산되는 ‘부채’항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초통계량 분석결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부채비율 차이가 대동소이하여 자산수익률의 집단 간 분산 값을 그만큼 작게 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통계적 유의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용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가설 1]은 기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분산분석(ANOVA) 결과 ①: 영리/비영리법인 2자 비교

		전체	비영리	영리	F-값	p-value
		n=200	n=100	n=100		
		평균	평균	평균		
종속 변수	자산수익률(ROA)	7.17	8.28	6.06	3.28	.072
	당기순이익(NI)	7.24	7.46	7.01	12.51	.000
독립 변수	사회공헌도(SC)	3.17	3.48	2.86	14.15	.000
	법인세납입률(CT)	47.77	12.72	82.82	20.99	.000
	제품경쟁력(PC)	3.38	2.79	3.97	55.70	.000
	인건비율(LC)	25.81	46.20	5.43	25.84	.000
	부채비율(LI)	241.98	217.53	266.44	0.24	.621

참고로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비록 관측치(학교: 14, 의료: 86)의 차이로 분석결과와 유의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겠으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대표 법인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이점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영리/의료/학교법인 3자 비교가 양자비교의 집단 간 차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개 모든 변수 평균값의 집단 간 차이가 1%의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수익성 부분에서는 의료법인 보다 학교법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납입률은 학교법인은 전액 비과세 감면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인건비율 변수에서도 의료종사자의 높은 인건비 수준이 반영되어 의료법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은 의료법인이 대학법인보다 2배 이상 높고 영

리법인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표 6] 분산분석(ANOVA) 결과 ②: 영리/의료법인/학교법인 3자 비교

		전체	비영리		영리	F-값	p-value
			의료법인	학교법인			
		n=200	n=86	n=14	n=100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종속 변수	자산수익률(ROA)	7.17	6.69	18.05	6.06	13.304	.000
	당기순이익(NI)	7.24	7.05	10.03	7.01	16.220	.000
독립 변수	사회공헌도(SC)	3.17	3.41	3.93	2.86	8.339	.000
	법인세납입률(CT)	47.77	14.79	.00	82.82	9.964	.000
	제품경쟁력(PC)	3.38	2.86	2.36	3.97	29.282	.000
	인건비율(LC)	25.81	47.89	35.81	5.43	585.206	.000
	부채비율(LI)	241.98	235.09	109.64	266.44	.315	.730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영리활동 자체로서 또는 그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행되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하여 신용이론의 논리기반 하에서 제시한 몇 가지 가정을 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가설 1]은 앞선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바 있고, 연구[가설 2](비영리조직의 공익성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한다)와 연구[가설 3](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익사업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은 이번 OLS Regression의 방법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기업의 수익성 지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자산수익률(ROA)과 당기순이익(NI)으로 나눈 두 가지 OLS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래, 기업의 보다 객관적인 수익성 비교를 위해서는 자산수익률(자산을 통제된 가운데 1단위 당 당기순이익을 표시)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석과정에서 기업 간의 심한 자산 편차 및 이상치(outlier)의 존재로 인하여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산수익률을 당기순이익으로 종속변수를 변환하고, 분산의 안정을 위하여 대수(log)를 취한 후 분석한 결과보다 유의성 있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이하에서는 상기 두 유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한다.

가. 자산수익률 모델(종속변수: 자산수익률(ROA))

자산수익률(ROA)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하 ROA 모델)의 식은 아래 식 1, 2, 3과 같으며, 구체적 분석결과는 [표 7]에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표시하는 f 값은 세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결정계수(adj-R²)는 영리법인 모형(이하 영리모형)이 가장 높은 33.59%이고, 비영리법인 모형(이하 비영리모형)은 28.4%이며, 비영리/영리법인을 통합한 모형(이하 통합모형)은 30.95%로 분석되었다. 계수의 t 값의 경우 법인세납입률(CT)은 세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경쟁력(PC) 변수의 경우, 양(+)의 관계로 나타난 통합모형과 달리 비영리모형 및 영리모형은 음(-)의 관계로 이례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비영리법인 더미변수(np)의 경우는, 그 계수 값이 10.5443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즉,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에 비해 자산수익률이 10.5%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식>- 통합모형

$$ROA = -8.1498^{***} + 3.9299SC^{***} - 0.0001CT + 1.0990PC^{**} - 0.2362LC^{**} - 0.0004LI + 10.5443np^{***}$$

<2식>- 비영리모형

$$ROA = 0.0107 + 6.1240SC^{***} - 0.0008CT - 0.5801PC - 0.2478LC^{***} - 0.0005LI$$

<3식>- 영리모형

$$ROA = 10.1039 + 1.4276SC - 0.0003CT - 1.6271PC - 0.2381LC^{*} - 0.0012LI^{*}$$

다음, ROA 모델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는,

첫째, [가설 2](비영리조직의 공익성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한다)의 경우, Likert-type의 서베이를 통하여 측정된 사회적 공헌도(SC) 변수와 자산수익율(ROA)의 관계로서 검정한 바, 방향성은 예상과 같이 세 모형 모두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은 통합모형과 비영리모형에서는 1% 유의수준으로 영가설($H_0: \beta_1 = 0$)을 기각할 수 있으나, 영리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 수익사업의 수익성 결정요인으로서 공익성 이미지는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가설 3](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익사업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의 경우, 세 모형 모두 수익률(ROA)과 법인세납입률(CT)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기대부호와 일치하나 세 모형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비영리법인 모형의 법인세납입률의 β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영리법인보다 수익성 제고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표 7] 수익결정 회귀모형 ①: 〈ROA 모델〉

		1식 (통합모형)	2식 (비영리모형)	3식 (영리모형)
독립 변수	사회공헌도(SC)	3.9299 ***	6.1240 ***	1.4276
	법인세납입률(CT)	-0.0001	-0.0008	-0.0003
	제품경쟁력(PC)	1.0990 **	-0.5801	-1.6271
	인건비율(LC)	-0.2362 ***	-0.2478 ***	-0.2381 *
	부채비율(LI)	-0.0004	-0.0005	-0.0012 *
	비영리법인더미(np)	10.5443 ***	-	-
상수		-8.1498 ***	0.0107	10.1039
adj-R2		0.3095	0.2840	0.3359
모형의 적합도(F값)		15.87 ***	8.85 ***	11.02 ***

주: 1. 상관계수의 ***, **, *는 유의수준 1%, 5% 및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음.

나. 당기순이익 모델<종속변수: 당기순이익(NI)>

당기순이익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하 NI모형)의 식은 아래 식 4, 5, 6와 같으며, 구체적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NI모형의 세 모형은 앞서 분석한 ROA모형보다 전체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통합모형의 F 값은 15.87에서 31.14로 높아졌으며, 조정된 결정계수(adj-R2)도 30.95%에서 47.61%로 개선되었다. 특히 각 변수의 β 값들의 방향성이나 유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ROA모형의 영리모형 및 비영리모형에서는 제품경쟁력(PC)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으나 NI모형의 영리모형 및 비영리모형에서는 기대부호와 일치된 양(+)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설명변수 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 ROA모형-영리모형에서 사회적공헌도(SC)의 β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NI모형-영리모형에서는 10%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ROA모델-영리모형 및 통합모형의 법인세납입률(CT)과 달리 NI모델-영리모형 및 통합모형의 법인세납입률(CT)의 β 값은 비영리모형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④ 인건비율(LC)의 경우, ROA모델-영리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NI모델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부채비율의 β 값은 전체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NI모델-영리모형에서는 1%의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식〉- 통합모형

$$NI = 1.9268^{***} + 1.0396SC^{***} - 0.0011CT^{***} + 0.6269PC^{***} - 0.0452LC^{***} \\ - 0.0002LI + 2.2313np^{***}$$

〈5식〉- 비영리모형

$$NI = 4.3967^{***} + 0.9236SC^{***} - 0.0113CT^{***} + 0.6272PC^{**} - 0.0402LC^{***} - 0.0001LI$$

〈6식〉- 영리모형

$$NI = 10.1039 + 1.4276SC^{**} - 0.0003CT^{**} + 1.6271PC - 0.2381LC^{*} - 0.0012 LI$$

다음, NI 모델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는,

첫째 [가설 2](비영리조직의 공익성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한다)의 경우, 사회적공헌도(PC) 변수와 당기순이익(NI)의 관계분석으로 검정한 바, 방향성은 ROA모델의 모형과 같이 세 모형 모두 정비례 관계로 나타났고, 회귀계수 β 는 통계적으로 세 모형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가설 2] 검정과 관련하여 〈5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ROA모델-비영리모형의 사회적공헌도 회귀계수는 0.9236으로서 1%의 유의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바, ROA모델에서와 같이 연구가설은 참으로 검정되었다.

둘째 [가설 3](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은 수익사업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의 경우 ROA모델에서와 같이 법인세의 감면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성에 기여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참고로, 세 모형의 법인세납입률(CT) 변수의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값이 아니므로, 비록 법인세납입률의 계수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났더라도 다른 설명변수에 비하여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표 8] 수익결정 회귀모형 ②: 〈 SC 모델 〉

		4식 (통합모형)	5식 (비영리모형)	6식 (영리모형)
독립 변수	사회공헌도(SC)	1.0396 ***	0.9236 ***	0.8416 **
	법인세납입률(CT)	-0.0011 ***	-0.0113 ***	-0.0010 ***
	제품경쟁력(PC)	0.6269 ***	0.6272 **	0.3673
	인건비율(LC)	-0.0452 ***	-0.0402 ***	-0.1139 ***
	부채비율(LI)	-0.0002	0.0001	-0.0007 ***
	비영리법인더미(np)	2.2313 ***	-	-
상수		1.9268 ***	4.3967 ***	4.0154 *
adj-R2		0.4761	0.5553	0.4651
모형의 적합도(F값)		31.14 ***	25.73 ***	18.22 ***

주: 상관계수의 ***, **, *는 유의수준 1%, 5% 및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Ⅵ. 결 론

1. 정책적 시사점

영리조직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소비자의 불신, 공급자에 전속되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그리고 정보파악을 위한 소비자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장실패(市場失敗)의 상황을 치유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조직이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신용이론(Trust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영리조직은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법인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으나 인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비영리조직의 공익성 이미지가 수익사업의 매출(이익)에 기여되는가’의 연구가설과 셋째,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성에 기여되는가’의 연구가설이 모두 인용되었다. 의료행위와 같이 수익사업 그 자체가 비영리활동이건, 비영리활동의 재원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이건 영리법인과 같이 수익지향적인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즉, 비영리법인의 재화와 서비스도 동종 영리법인과 경쟁과정 속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되고, 이와 더불어 공익성이란 소비자의 긍정적 이미지와 비과세 감면이란 추가적인 국가수혜로 영리법인보다 높은 수익성을 견지한다고 본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용이론에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의 존재이유는 영리법인보다 “싸고 질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있고, 본 연구 분석결과는 현재 비영리조직은 적어도 ‘더 싼 제품’ 또는 ‘더 질 좋은 제품’에 대한 공급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몇 가지 정책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째, 수익금 사용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체계 도입이다. 현행 비영리법인의 업무감독 체계이고 재무운용에 대한 공적감독 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이를 해당 조직에서 고용하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관행은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서 만들어진 제도적 유습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손금산입방식의 개선이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제상 가장 큰 차이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도이다. 즉 법인세의 과표대상이 되는 당기순이익을 결산조정 과정에서 미래의 비영리활동을 위한 준비금(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입(비용처리-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선 100%, 의료법인은 50% 한도로 허용되고 있다.

① 100% 감면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현행 법인세 비과세 감면은 정책적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100%의 감면수준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전액 비과세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영리조직으로서 는 그만큼 관련 회계 및 과세자료를 투명하게 유지시킬 유인이 적어진다고 할 것이며,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비영리조직을 세무 정책적 관심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비영리조직에 대한 소관부처의 업무감독 체제로서 재무적 감독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비영리조직에 대한 최대 비과세 한도는 100% 미만(예, 90%, 80%)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② 고유목적준비금 제도의 폐지이다. 결산조정과정에서 이익금의 비용처리는 결국 대차대조표 부채로 인식되고, 향후 비영리활동의 투자재원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향후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영리조직은 각종 적립금 등 자본잉여금으로 회계 처리되고 그전에 법인세가 납부된다. 즉, 비영리조직의 경우도 고유목적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고 영리조직과 같이 잉여금방식으로 투자재원을 적립하고, 다만 법인세는 세무조정신고 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행제도는 비영리조직의 법인세 감면 혜택은 고유목적준비금제도를 손금처리방식과 세무조정신고 제도 중 해당 비영리조직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준비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대외적으로 왜곡되게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주체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과세혜택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리법인과 비교를 통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수익성 수준자체에 대한 비교는 물론 그 결정요인의 비교를 통하여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의 방법에 연구결과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의 영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업종이 동일하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의 업종은 양적인 연구방법으로 연구대상이 될 정도로 다양하지 않다. 최근에는 각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발판으로 햄, 고추장, 라면 등 다양한 제조업 등 분야에 진출하고는 있으나 그 규모나 소비자 인지도, 제품 경쟁력 등에서 일반기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비중이 낮더라도 기부금, 수익사업 등의 다양한 수입원천을 별도로 구분 계리한 재무제표가 공시된다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동 업종 영리법인 (특히 제조업 분야) 간의 사업비교 분석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주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이 활성화된 의료법인과 대학법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사실, 대학법인의 수익사업의 비중이 병원사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리법인도 병원사업자 모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의료법인 위주이고 개인병원은 비법인(非法人) 사업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의 병원에 대응하는 영리법인의 병원으로 존

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이익이 공익성 추구라는 비영리법인의 소비자 신뢰에 기인한다는 신용이론(trust theory)에 입각한 가설에 대한 검증인 점을 감안할 때, 비영리법인과 일반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도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이익 결정요인과 그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부록 1〉 설문조사

설문지

최근 학교법인,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은 비영리활동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우유, 와인, 간장, 고추장, 빵 등 제조업과 의료, 어학교육 등 서비스업에 이르기 까지 일반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양한 업종의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기업과 공익법인 제품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단한 인지도 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는 연구자료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점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1. 사회공헌도에 대한 평가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①일반기업	()	()	()	()	()
②공익법인	()	()	()	()	()

2. 제품 경쟁력에 대한 평가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①일반기업	()	()	()	()	()
②공익법인	()	()	()	()	()

3. 인적사항

☐ 남 () 여 ()

☐ 나이 ① 30대 이하 () ② 30~50대 () ③ 50대 이상

☐ 학력 ① 고졸 이하 () ② 대졸이상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2.
-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4.
- 김민경,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의료업에 대한 감면축소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인배,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에 관한 연구-수익사업 중심으로,” 한국 항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준기,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2006.
- 노연희,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시장지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제42권 제2호, 2008, 305~326쪽.
- 박정우, 「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손원익·박태규, 「공익법인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신영수, “비영리단체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법리와 기준,” 「법학논고」 제3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627~650쪽.
- 양난주 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리·비영리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27~52쪽.
- 오영호 외,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윤영만 외, 「비영리조직의 이익조정: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2012.
- 정래용, “사립대학의 감가상각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0.
- 정운영, “신용협조합의 수익성 결정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기준, 「대학도 이제는 경영해야 산다」, 월간에세이출판부, 1995.
- 허원, “의료법인의 타 법인 출자 허용 논란을 계기로 본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1.
- 각 사립대학 홈페이지
- 공인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npoinfo.hometax.go.kr>
- NICE신용평가정보시스템, <www.kisvalue.com>
- Abheier, Helmut & Lester. Salamon, “The Nonprofit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The Nonprofit Sector: A Research Handbook*, 2nd (ed.), Walter W. Powell & Richard Steinberg, ed., Yale University Press, 2006.

Analysis an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for Income Determinator of Non-Profit Corporations

Hong, Heongson

Abstract

As of 2012, the figure of the tax report on non profit corporation is 20,240 in total, and yet over 16,000 of the reports created surpluses and net profit that exceeded up to 11.6 trillion won which corresponds to 7.8 billion won per non profit corporation. Furthermore, by considering public benefit of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vested in organizations such as education institutions,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medical corporations, it can be said that pure profit and the official report of these organizations can show discrepanc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fit of non profit corporations has increased thanks to both public's trust toward the public-first orientation it usually stands for and the public benefits like non-taxable reduction for the non profit corpor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non profit corporation financial statement and consumer questionnaire survey to find out the income determinator. In addition, it was generally believed by the public that the rate of profit of the non profit corporation is lower than that of profit making businesses because non profit corporation do not try to maximize the profi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price cutting policy of the services and products provided by the non profit corporation may be effective, but it is not the best alternative in regard to their prices determined in the market as well. Instead, this study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guaranteeing the re-investment of the profit into the original inherent public business be more strengthened. First, 100% non-taxable reduction for some non profit corporations has to be transformed into low rate taxation, and so the taxation material would be transparently under control. Secondly, in light of the publicness,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accurate report is paramount. Therefore, the current system regarding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as a necessary business expenses should be abolished and revised to tax reconciliations since th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 might distort the reliability of the profit / loss report.

- Keywords: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Public business, non-profit corporation, profit-making business, medical corporation, Educational institution